

의안번호	제 63 호	의결사항
의결년월일	1996. 12 . (제 회)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11. 20 .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
----------	----

제출일자 : 1996. 11. 29.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 (안 제7조)
- 어린이집 종사자 정년을 시설장 61세, 기타 종사자는 58세로 정함.(안 제13조의2)
- 시설장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근무상한 기간을 두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음. 다만, 제13조의 2에 규정된 정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13조의 3)
- 본 조례 시행이전에 임용된 시설장으로서 정년이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는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음.(부칙)
- 어린이집 주소 일부 변경(안 별표1)
 - 대방어린이집 : 대방동 322-19번지 → 대방동 322-29번지
 - 동서어린이집 : 동동 351-1번지 → 동동 360번지
 - 삼천포어린이집 : 사천시 벌리동 구획정리지구 2블럭 10롯트 → 사천시 벌리동 구획정리지구 4블럭 1롯트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같이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4조 본문중 “근로자”를 “근로”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보육료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정년) 어린이집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고,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시설장 : 61세
2. 기타 종사자 : 58세

제13조의3(근무상한 기간)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장의 근무상한 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시설장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중 “사업지침”을 “보육사업 지침”으로 한다.

[별표1] 중 사천시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중 대방어린이집 위치란중 “322-19”를 “322-29”로 하고, 동서어린이집 위치란중 “351-1”을 “360”으로 하며, 삼천포어린이집란중 “2블럭 10롯트”를 “4블럭 1롯트”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이전 임용된 시설장으로서 정년이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 ③(근무상한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임용되어 근무중인자의 근무상한 기간 적용시점은 이 조례 시행한 날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이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이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같다.
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자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제4조(보육대상) 보호자가 근로자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보호하기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한다.	제4조(보육료)	근로
1.~2.(생략)	1.~2.(생략)	1.~2.(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제7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보육료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보육료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신설>	제13조의2(정년) 어린이집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고,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13조의2(정년) 어린이집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고,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시설장 - 61세	1. 시설장 - 61세
		2. 기타종사자 - 58세	2. 기타종사자 - 58세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의3(근무상한 기간) 어린이집	운영의 합리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장의 근무상한 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시설장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보건복지부의 <u>사업지침</u> 에 의한다.	제19조(준용) <u>보육사업지침</u>.....